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5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 김영배・김동아・이훈기

조계원 • 이학영 • 한정애

김영호 · 김태선 · 손명수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 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 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	
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
	<u>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u>
	<u>교정·보호 시설</u>